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지연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해태기간	과태료 금액(원)	비 고
45오9408	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말소등록 기간경과	2023.08.08. ~2026.04.29.	400,000	사전통지

4. 공고기간: 2026. 06. 02.(화) ~ 2026. 06 .16.(화) 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본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고지서를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기한: 2026. 06. 02. ~ 2026. 06. 30.
- 우편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2층 말소등록 담당자
- FAX 제출: 051-888-6923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6. 02.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